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查報告書

2005. 2. 25.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 경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2월 7일

○ 회부일자 : 2005년 2월 11일

상정일자 :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5. 2. 21 :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안 이유

○ 재난방재조직 보강과 혁신분권 전담부서 변동에 따라 실·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명칭 변경
 - 건설교통국 ⇒ 건설방재국
- 분장사무 조정
 -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등에 관한 사항(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
 -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자치행정국⇒기획관리실)
 - 민방위에 관한 사항(자치행정국⇒건설방재국)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

- 본 조례안은 과대조직 정비와 재난방재조직 보강, 그리고 혁신분권 전담부서 변동 등에 따라 실·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①신 설

- 과신설 : 재난관리과(총괄담당, 대책담당, 복구담당, 지원담당)
- 담당(팀)신설 : 과표담당, 혁신지원팀, 역사규명담당

②분리 및 통폐합

- 세무회계과 ⇒ 세정과, 회계과
- 민방위과+안전관리과 ⇒ 민방위안전관리과

③기능이관

- 혁신분권담당관 : 기획관리실 ⇒ 자치행정국
- 정보통신과 : 자치행정국 ⇒ 기획관리실
- 민방위과 : 자치행정국 ⇒ 건설방재국

- 먼저 재난방재 전담조직 개편으로는
 -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명칭변경하고,
 - 민방위과를 건설방재국으로 이관하면서 안전관리과와 통합하여 『민방위안전관리과(민방위담당, 안전점검담당, 하천계획담당, 하천시설담당, 경보통제담당)』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 혁신분권 전담기구의 개편내용은
 - 시·군 혁신에 대한 도 본청의 지원·총괄기능 수행을 감안하여 혁신분권담당관실을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되,
 - 업무성격에 맞도록 교육지원팀은 “기획관실”로, 균형발전팀은 “경제과”로 이관하고, 시·군 지원·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지원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세정 기능보강,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인력 보강, 그리고 과대조직 기능조정으로는
 - 자치행정과내에 역사규명담당을 신설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업무를 전담하고,
 - 과대조직인 세무회계과를 “세정과(4담당)”와 “회계과(5담당)”으로 분리하면서 세정과에 주택가격제도 시행을 전담할 『과표담당』 신설하는 한편, 총무과의 청사시설담당

을 회계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한 실·국명칭과 분장사무의 조정내용을 담은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 다만,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업무는 참여정부가 비중있고 의욕적 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관심과 변화의 노력 등이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측면에서 혁신전담기구를 기획관리실(2급)에서 자치 행정국 (3급)으로 이관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추진에 대한 가속도내지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며,
- 행정수요가 확대 또는 감소로 조직정비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없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한 필요기구만을 신설하려는 이유와 신설기구업무중 동학혁명과 일제강제동원 피해규명 관련 업무는 일사불란한 추진과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에서 처리하도록 일원화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 아울러 과대조직 정비차원에서 세무회계과는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하면서도 조직이 가장 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는 아무런 조정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끝으로 조례안 부칙으로 개정돼야할 조례중 “충청북도 의회 위원회 조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개정시에는 보다 세밀하고 치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 수정 이유
 - 행정기구의 잦은 명칭변경으로 인한 도민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명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 및 국장의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 업무분장사항 또는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수정 주요내용

- 과단위업무 분리에 따른 관장업무 구체화(안 제7조제9호)
 - 예산의 지출·결산업무
→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
- 자치행정국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업무 명확히 구분
 -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호)
- 국 및 국장명칭 변경 혼란방지를 위해 현행대로 사용
(안 제5조, 안 제12조, 안 부칙 제2조)
 - 건설방재국 → 건설교통국
 - 건설방재국장 → 건설교통국장

7. 심사 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2. 21.
제안자 : 정상혁 의원 외

□ 수정 이유

- 행정기구의 잦은 명칭변경으로 인한 도민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명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 및 국장의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 업무분장사항 또는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과단위업무 분리에 따른 관장업무 구체화(안 제7조제9호)
 - 예산의 지출·결산업무
→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
- 자치행정국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업무 명확히 구분
 -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호)
- 국 및 국장명칭 변경 혼란방지를 위해 현행대로 사용
(안 제5조, 안 제12조, 안 부칙 제2조)
 - 건설방재국 → 건설교통국
 - 건설방재국장 → 건설교통국장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중 “건설방재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안 제7조중 제9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는

제12호로 한다.

9.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

11.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2.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 제목 “(건설방재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건설방재국장”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중 제2항, 제4항내지 제6항, 제8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7항을
제3항으로 제9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2항중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안전 관리담당”을 “총괄담당”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농정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u>방재국</u>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u>건설</u> <u>방재국</u> <u>교통국</u>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행정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실)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실) (개정안과 같음)
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예산의 지출결산 업무 10.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 관한 사항 11.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2.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1. ~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등 에 관한 사항 11.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 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조(자치행정국) 1. ~ 8. (개정안과 같음) 9.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 무 10. (개정안과 같음) 11.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2.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 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을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신설> 6. ~ 12. (생략)	제12조(건설방재국) 1. ~ 5. (현행과 같음) 6. 민방위에 관한 사항 7. ~ 13.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설교통국) 1. ~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 13. (개정안과 같음)
부칙(조례 제2819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혁신 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자치행정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 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조례 제2819호)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한시기구) <u>자치행정국 혁신 분권과</u>	부칙(조례 제2819호)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한시기구)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u>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u>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u>제3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u> 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③ <u>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u>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 <u>건설교통국장</u> “ <u>건설방재국장</u> 으로 “ <u>안전관</u> 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 <u>안전</u> 관리담당”을 “ <u>총괄담당</u> 으로 한다. ④ <u>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u>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 <u>건설교통국장</u> 을 “ <u>건설방재국장</u> 으로 한다. ⑤ <u>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u> 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 <u>건설교통국장</u> 을 “ <u>건설방재국장</u> 으로 한다. ⑥ <u>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u>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 <u>건설교통국장</u> 을 “ <u>건설방재국장</u> 으로 한다. ⑦ <u>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u>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 <u>세무회계과</u> 를 “ <u>회계과</u> ”로 한다. 제30조 중 “ <u>세무회계과장</u> 을 “ <u>회계</u> 과장”으로 한다. ⑧ <u>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u>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 <u>건설교통국장</u> 을 “ <u>건설방재국장</u> 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개정안 과 같음) <u><삭 제></u> ②(삭제)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③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⑨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원한위임사무중세무회계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를 세정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세무회과 소관 제5호, 내지 제7호를 회계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분야별 란의 “안전관리과”를 “민방위안전관리과”로 한다.</p>	④ (개정안과 같음)

□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u>총무담당민방위담당간사</u> : <u>자치행정국장</u> 2. <u>심리전담당간사</u> : <u>정보관</u></p>	<p>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u>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u> : <u>자치행정국장</u> 2. <u>심리전담당간사</u> : <u>정보관</u></p>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안과 같음)

□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②기금운용관은 <u>건설교통국장</u>로, 기금분임운용관은 <u>안전관리과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u>안전관리담당</u>으로 한다.</p>	<p>제5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u>건설방재국장</u>..... <u>재난관리과장</u>..... <u>총괄담당</u>..... </p>	<p>제5조(회계공무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u>건설교통국장</u>..... <u>재난관리과장</u>..... <u>총괄담당</u>..... </p>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8

제출연월일 : 2005년 2월 7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 재난방재조직 보강과 혁신분권 전담부서 변동에 따라
 실·국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건설교통국 ⇒ 건설방재국
- 분장사무 조정
 -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등에 관한 사항(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
 -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자치행정국→기획관리실)
 - 민방위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건설방재국)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한다.

제6조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제7조중 제9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

10.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등에 관한 사항

11.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중 제6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방위에 관한 사항

부칙(조례 제2819호, 2004. 10. 1) 제2조중 “기획관리실 혁신
분권담당관”을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
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 자치행정국장

②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2항중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안
전관리담당”을 “총괄담당”으로 한다.

③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세무회계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30조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세무회계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를 세정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
고, 세무회계과 소관 제5호 내지 제7호를 회계과 소관 제1
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분야별란의 “안전관리과”를 “민방위
안전관리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략) <u>10. 행정혁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u></p>	<p>제6조(기획관리실</p> <p>1. ~ 9. (현행과 같음) <u>10.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u></p>
<p>제7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8. (생략) <u>9. 예산의 지출·결산 업무</u> <u>10.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u> <u>11.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u> <u>12. (생략)</u></p>	<p>제7조(자치행정국</p> <p>1. ~ 8. (현행과 같음) <u>9. 예산의 지출·결산 등 회계업무</u> <u>10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등에 관한 사항</u> <u>11.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u> <u>12. (현행과 같음)</u></p>
<p>제12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생략) <u>(신설)</u> <u>6. ~ 12. (생략)</u></p>	<p>제12조(건설교통국</p> <p>1. ~ 5. (현행과 같음) <u>6. 민방위에 관한 사항</u> <u>7. ~ 13. (현행과 같음)</u></p>
<p>부칙(조례 제2819호)</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한시기구) <u>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u> 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자치 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 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부칙(조례 제2819호)</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한시기구) <u>자치행정국 혁신분권</u></p>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통합 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무담당상기획담당간사 자치행정 장 <p>②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 제2항 중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 리과장”으로 “안전관리담당”을 “총괄담 당”으로 한다.</p> <p>③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p> <p>제28조 제2항 중 “세무회계과”를 “회계과” 로 한다.</p> <p>제30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 로 한다.</p> <p>④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 중 세무회계과 소 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를 세정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제5호 내지 제7호를 회 계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분 야별란의 “안전관리과”를 “민방위안전 리과”로 한다.</p>

□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p> <p>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1. <u>총무담당·민방위담당간사</u> : 자치 행정국장</p> <p>2. (생략)</p>	<p>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p> <p>1. 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 : 자치 행정국장</p> <p>2.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p> <p>② <u>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u> <u>기금분임운용관은 안전관리과장으로,</u> <u>기금출납원은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u></p>	<p>제5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재난관리과장</u>..... <u>총괄담당</u>.....</p>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 품출납원은 그 소관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u>세무회계과장</u> 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u>회계과장</u>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분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u>세 무</u> <u>회계과</u>	1~4	(생 략)		<u>세정과</u>	1~4	(현행과 같음)	
<u>세 무</u> <u>회계과</u>	5~7	(생 략)		<u>회계과</u>	1~3	(현행과 같음)	
<u>안 전</u> <u>관리과</u>		(생 략)		<u>민 방 위</u> <u>안전관리과</u>		(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실·국·본부 등 기구의 설치)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